신·구조문대비표

어선법(개정전)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어선법(개정후) [법률 제15008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

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어선의 검사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신 설>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신 설>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 - -

	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효력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신 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 13의3. (생 략)	12. ~ 13의3. (현행과 같음)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4. - - -

6. (생 략) <신 설>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등에 관한 검사·승인
② ~ ⑥ (생 략)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3.28, 2009.5.27]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신 설>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 지정사업장----------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 ----------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신 설>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8.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	**제49조(벌칙의 준용)** ----------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한정한다) · 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 · 제6호 · 제11호, 제85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 － － － . － － － －

	자
<신 설>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신 설>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3호·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